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2017구합749]

사 건 명 : 승무 중 직무의 질병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1

전남 신안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8. 8. 30.

판 결 선 고 :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승무 중 직무 외 질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근해○○어선으로 새우젓을 어획하는 ○○호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호는 2016. 7. 3. 05:28경 전남 ○○군 ○○면에 있는 ○○○항에서 출항하여 해상에서 새우젓 어획작업을 하였고, 2016. 7. 5. 05:00경 당일 조업을 시작하여 선원들이 5시간 정도 미리 해상에 투입해 두었던 어구에서 그물을 올려 새우젓을 어획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는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배를 운항하였다. 원고와 선원들은 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15:00경까지 각자 선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016. 7. 5. 15:00경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호가 운항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5:30경 원고의 발음이 어눌하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와서 ○○호의 운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주변에서 어획작업을 하던 다른 선장들이 다른 배를 이용하여 원고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6. 8. 29.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기존 개인력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승무 중 직무 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이 타당하나, '동 건은 최초 발병일인 2012. 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건'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8.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

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 산하 ○○○○보상보험 ○○위원회에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3.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